

○ 문화체육관광부공고(입법예고)제2024-16호(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)

관보 제20666호(2024. 01. 12.) 에 게재된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-537호(게임산업
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)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
니다.

2024년 01월 17일

문화체육관광부장관

관보내용	정정사항	비고
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4-537호	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 2024-15호	공고번호 수정
PC방 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 항 위반과 관련하여	청소년이 PC방에서 성인의 주민 번호를 이용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 이용 시	PC방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구체적 내용 보완